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10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누5053 지방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◯◯ 담당변호사 ◯◯◯
피고, 항소인	◯◯시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◯◯ 담당변호사 ◯◯◯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22. 11. 9. 선고 2022구합20084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11. 10.
판 결 선 고	2023. 12. 8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9. 9. 3.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(이하 '이 사건 거부처분'이라 한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10

다)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(갑 제19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감정인 E의 공사착공 감정 결과)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, "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따라, 원고가 2014. 12. 31.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, 원고가 2014. 12. 31.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."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,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⑤ 당심 감정인 F은, "2014. 12.경 촬영된 현장사진(갑 제14호증)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보이므로, 이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10

사건 공사의 규준틀은 그 이전에 설치되었고, 그 기점을 기반으로 가설울타리 공사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. 공사일보(갑 제12호증), 기성청구서(갑 제13호증의 2)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는 2014. 12. 31.을 기준으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정도의 부지를 파내는 굴착 공사나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."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면, 원고는 2014. 12. 31.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의 규준틀을 설치한 후 굴착 공사나 터파기 공사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